



제340회 임시회
2015. 6. 10.(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박한범 의원 등 7명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5년 6월 1일
- 회부일자 : 2015년 6월 2일

3. 제안이유

- 위원의 제척·회피·위촉 해제 사유 명시 및 비밀유지 규정을 명시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 규제개혁 관련 공적이 있는 자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규제개혁 업무추진에 적극성을 부여함.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구를 수정하여 일반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내용

가.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 1)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 신설(안 제4조의2)
- 2) 위원의 제척·회피 사유 신설(안 제6조의2)

나. 위원의 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비밀유지 조항 신설(안 제6조의3)

다. 규제개혁 관련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포상 근거조항 신설(안 제11조)

라. “규제개혁추진단” 및 “규제개혁추진단장” 을 “규제개혁
관련 업무부서” 및 “규제개혁 관련 업무부서의 장” 으로 수정
(안 제7조, 안 제8조)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 “새로이” 를 “새로” 로 수정(안 제4조)
- “하는 때” 를 “할 때” 로 수정(안 제6조제3항)

5. 검토의견

- 현행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충청도의 행정규제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행정규제 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2014.7.17.일자로 구성된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는 기존규제, 규제 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및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관한 사항,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 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본 개정 조례안은, 위원회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하여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 및 “위촉해제”, “비밀유지” 조항 등을 신설하고, 규제 개혁 과련 공적이 현저한 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및 문구를 정비한 것임.
-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관련 상위법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화 하였고(안 제1조)

※ 「행정규제기본법」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

둘째, 위원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위촉 해제” 규정(안 제4조의2) 및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안 제6조의2)을 마련하였으며, 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비밀유지 조항(안 제6조의3)을 신설함.

셋째, 규제개혁 관련 공적이 현저한 개인·기업·단체·공무원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안 제11조)하였으며

넷째, 규제개혁추진단 부서·부서장 명칭을 ‘규제개혁 관련 업무 부서’ 및 ‘규제개혁 관련 업무부서의 장’으로 변경(안 제7조, 안 제8조)하였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안의 용어 및 문구를 수정하였음.

- 본 개정 조례안은, 위원회의 주요 기능인 심의·의결 과정에서 위원의 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이 상호 충돌하는 사안의 경우, 이해 충돌 방지의 통제장치를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였으며,
- 위원의 비밀유지 및 위촉 해제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위원회 활동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등 법리적·내용적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됨.